



2022-12-001

2022년도
응암3동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보고서

주민과 함께하는, 응암3동 주민자치회



응암3동 주민자치회

목 차

■ 인사말	02
■ 1. 응암3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4
■ 2. 응암3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5
■ 3.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06
■ 4. 응암3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07
■ 5. 2022년 응암3동 주민자치회 예산교부 및 집행 내역보고	10
■ 6. 2022년 응암3동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보고	13
■ 7. 2022년 응암3동 서울시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사업 보고	15
■ 8. 2022년 응암3동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지역사업 보고	16
■ 9. 2022년 제2회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보고	17
■ 10. 주민자치회 활동	23
■ 2022년 의제개발 역량강화 워크샵	23
■ 분과회의 및 정기회의	24
■ 참다래마을 문화축제	26
■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마을로고 공모전	28
■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29
■ 11.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0
■ 12.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0

인사말



안녕하세요. 응암3동 주민자치회 회장 조영만입니다.

제1기 주민자치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응암3동은 확대동으로 첫걸음마는 2021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행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 대면으로 전환후에는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응암3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지역현안의 문제들을 발굴 논의하고 개선하는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주민총회는 모든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현장 사전 투표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였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 제2기 주민자치위원들께 마을의제 사업 실행을 맡기셨습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서에는 올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제1기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한 마을의제 결과 및 2023년도 마을의제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주민 누구나 변화되어 가는 우리 응암3동의 모습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우리 응암3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써 주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

언제든 응암3동의 발전에 필요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응암3동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명수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응암3동 주민자치회 회장 조영만

인사말



안녕하세요. 응암 제3동장 김명수입니다.

제2회 응암3동 주민총회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기 응암3동 주민자치회 활동이 운영세칙 개정, 역량강화 워크숍, 2번 (2021년 비대면, 2022년 대면)의 주민총회, 2022년 참여예산 및 주민세 사업, 동 축제 등을 추진하면서 경험축적과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자료집은 2기 응암3동 주민자치회가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주민들께 선보이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집의 실천 사업들은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동네를 돌아보며 응암3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의제로 제출하여 많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응암3동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주신 조영만회장님과 임원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한층 더 발전하는 응암3동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응암3동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응암3동 동장 김명수

1. 응암3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2. 응암3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연왕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민관협력을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암3동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 46명 (2022. 12. 01.기준)

계	성 별(명)		연령 별(명)		단체, 개인 별(명)	
46	남	여	40대 이하	40대 이상	단체	개인
	22	24	2	44	16	30

■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2. 12. 01.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장	사무국장
조영만	유선희	이승남 전계삼	최정희	구한규 우루시하라 아깨미 김재열 황백규	원석진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 (2022. 12. 01.기준)

분과명	분과장/분과총무	위원	분과원	주요업무
건강복지 분과 10 / 0	구한규 / 이경원	곽충용, 김종우 박문년, 유정순 이국희, 이상준 주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건강 프로그램 개발운영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 복지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문화 분과 12 / 0	우루시하라 아깨미 / 한소영	강주현, 김영미 다카하시 히로코 아라이 미치에 유영희 이미숙 이승남, 임상열 조석진, 이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공간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자치회관 분과 11 / 0	김재열 / 최은영	강석길, 곽순재 문분연, 유선희 이영주, 최정희 조영만, 전계삼 황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회관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한 조사, 기획, 홍보 및 운영
환경안전 분과 13 / 1	황백규 / 박창희	권숙희, 김성숙 김수혁, 김영선 박정배, 한경희 심상술, 양태성 이강연, 정재수 최순희	박남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광천, 재래시장, 공원환경, 쓰레기문제 낙후 주거지역 환경개선 등

3. 주민자치외 운영 경과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2. 1.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 1월13일 비대면 정기회의
2022. 2.~3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분과구성 워크숍 운영세칙 워크숍	- 주민자치회장 선거 - 운영세칙 위원회 구성
2022. 4.~5.	2023년 마을의제 발굴	- 분과별 마을의제 발굴
2022. 6.	각 분과사업 실행 등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 6월11일 역량강화 워크샵 - 6월24일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2022. 7.~8.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2022년 마을의제 선정 참여예산사업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 마을의제 선정 사전 분과별 현장 투표 - 에코디자이너(업사이클링) 강의 -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설치
2022. 9.	2022년 주민총회	- 9월17일 2022. 주민총회
2022. 10.	2022년 마을축제 분과 사업 진행	- 10월1일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 - 10월22일 2022. 응암3동 참다래 문화마을 축제
2022. 11.	분과 사업 진행 연임 및 신규위원 모집 2022년 분과사업 실행	- 11월 23일 의제발굴 역량강화 워크샵 - 11월 28일~30일 참다래장독대 사업 - 연임위원 및 신규위원 대면/온라인 교육
2022. 12.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2022년 분과사업 실행	- 12월 13일 의제개발 교육: 연임위원 및 신규위원 - 12월 16일 사랑의 재능나눔사업 - 12월 21일 성과보고회 - 각 분과사업 마무리

4. 응암3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응암3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응암3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응암3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자치회 구성과 분과원 조직2) 각종 회의운영(실무회의, 분과회의, 운영위, 정기회의, 민관협력회의 등)3) 민주적 회의운영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 양호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 양호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 양호
종합의견	위드 코로나19로 대면운영 전환 및 사무국체제 도입이후 주민자치회 회장의 적극적인 사무국지원 운영방침에 따라 사무국에서의 원활한 지원업무등으로 인하여 각 분과의 회의 및 조직 활성화가 되고있고, 주민센터 행정인력들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행정서류 및 예산안등의 회계 장부관리가 양호함

붙임. 1. 응암3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6일

제출자 감사 (이승남 , 전계삼 

은평구청장 귀중

■ 감사 개요

- 근거 :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응암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3조
- 감사일시 : 2022. 7. 6.
- 감사장소 : 주민자치회 사무실
- 감사자 : 이승남, 전계삼

■ 감사 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분과위원 모집과 분과구성의 적절성	각 분과 위원들의 참여율 저조
2	분과별 자치계획서 작성	매우 우수
3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우 우수
4	주민총회	준비 상태 우수
5	동 축제	준비 상태 우수
6	실행을 위한 분과 재정비	개선필요
7	사업평가와 사업계획	적정
8	각종 회의 운영의 적정서	적정
9	정기회의의 민주적 운영	적정

2. 주민자치회 예산과 회계상태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예산수립, 예산과목 준수여부, 지출의 적정성	적정
2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 여부	적정
3	예산편성시 모든 예산의 누락여부	없음
4	주민자치회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적정
5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없음
6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일치
7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여부	예정
8	자치회관 수입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 계상 여부	예정
9	지출서류의 적정성	적정
10	예산의 허위성 지출여부	없음
11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적정성	적정
12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여부	적정
13	근무시간에 따른 사무국 활동비 지급의 여부	적정

3. 사업감사

- 1) 자치회 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여부 : 양호
 - 2) 자치회의 안정과 분과모임의 활성화 여부 : 개선요망
 - 3) 주민요구에 맞는 의제사업 진행여부 : 양호
- ※ 회의록 및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4. 회계감사

- 1) 상반기 사업 예산집행 결과 : 양호
 - 2) 집행기준 준수와 증빙 자료 : 양호
- ※ 지출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5. 2022년 응암3동 주민자치외 예산교부 내역 및 집행보고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구 비	시 비	이월액 (시 비)	계
	합 계	74,600	21,000	0	95,600
	간사활동비	11,400	3,000		14,400
	사무국장 활동비	12,000			12,000
	주민자치회 사업비		6,000		6,000
주민세 균등분	의제개발비 (2022년 제2회 주민총회)	22,000			
	참다래 장독대 사업	3,200			31,200
	사랑의 재능나눔 사업	6,000			
(시) 참여 예산	자원순환에서 탄소중립까지 -에코 디자이너 과정		12,000		12,000
(구) 참여 예산	불법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설치	20,000			20,000

주민자치회 예산교부 내역(2022. 10. 31.기준)

(단위:원)

구 분		교 부 일 자	비 고
총 계			
주민세	의제개발비	22,000,000원	2022.03.17
	의제실행비	9,200,000원	2022.03.31

운영비 집행 내역(2022. 10. 31.기준)

(단위: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시비	운 영 비	6,000,000	5,994,970	5,030	99.9%
시비+구비	사무국장활동비	14,000,000	10,000,000	4,000,000	71.5%
	간사활동비	14,400,000	12,000,000	2,400,000	83.4%
총 계		34,400,000	27,994,970	6,405,030	81.3%

2022년 주민세사업 교부 및 집행 내역(2022. 10. 31.기준)

(단위:원)

구 分	사 업 명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31,200,000	8,111,920	23,088,080
의제개발	주민총회 사업 및 역량강화교육비 / 성과공유회	22,000,000	8,111,920	13,888,080
의제실행	사랑의 재능나눔 사업	6,000,000	0	6,000,000
	참다래 장독대 사업	3,200,000	3,167,300	32,700

2022년 참여예산 사업 집행현황(2022. 10. 31.기준/사업완료)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32,000,000	27,760,000	4,240,000
시참	자원순환에서 탄소중립까지 - 에코 디자이너 과정	12,000,000	7,760,000	4,240,000
구참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응암로7길, 9길 일대)	20,000,000	20,000,000	0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2022. 10. 31.기준)

(단위:원)

수 입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10월31일 기준)
계	이월수입 (9월 잔액)	10월 수입		
15,003,957	14,706,891	297,066	3,191,490	11,812,467

6. 응암3동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자치회관 분과]

참다래장독대 사업(소요예산 3,200,000원)

: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청사 옥상을 활용 전통기법으로 담근 숙성된 장 나눔.

- 11월28일~30일



[건강복지 분과]

사랑의 재능나눔 (소요예산 6,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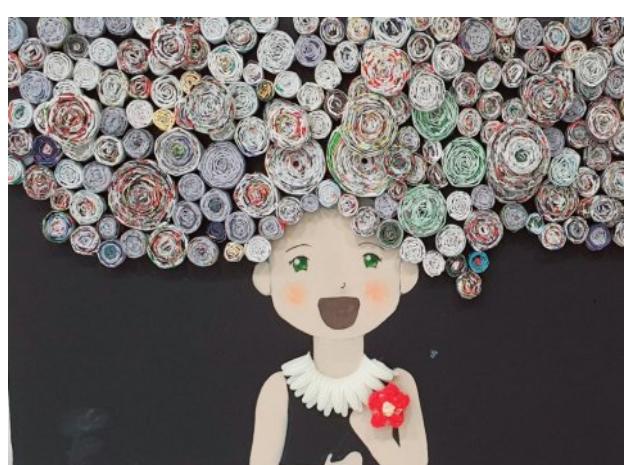
- : 우리 동네의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위한 도배, 장판 등의 교체작업을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와 협업하여 실시하며 청소년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복을 체험실시
- 12월16일 도배, 장판 교체 2가구 및 염색 등의 재능나눔 사업 실시



7. 2022년 응암3동 서울시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자원순환에서 탄소중립까지-에코 디자이너 과정 (소요예산 12,000,000원)

: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실천을 위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버려지원 폐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업사이클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



8. 2022년 응암3동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지역사업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CCTV설치(소요예산 20,000,000원)

-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용CCTV설치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
- 응암로7길, 9길 일대



설치 전



설치 후

9. 2022년 제2회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담당부서	제안분과
		100,00,000		
구참	2023. 사랑의 재능 나눔 사업	10,000,000	응암3동	건강복지
	우리동네 청소년/여성 안전지키미 사업	25,000,000	스마트정보과	교육문화
	참다래마을 장독대 사업	5,000,000	응암3동	자치회관
	우리가 함께 가꿔가는 아름다운 다래 불광천①	11,000,000	응암3동	자치회관
	우리가 함께 가꿔가는 아름다운 다래 불광천②	34,000,000	공원녹지과	자치회관
	응암3동 안전한 도시가스 생활실천 사업	15,000,000	응암3동	환경안전

동(洞) 주민총회 개최 결과

- 일시 : 2022. 9. 17.(토) 11:00
- 장소 : 응암3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
- 참석인원 : 150여명
- 사전투표(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진행) 및 현장투표
 - 사전투표 : 8. 22.(월) ~ 9. 15.(목) / 참여인원 693명
 - 현장투표 : 9. 17.(토) / 참여인원 71명
- 투표율 : 3.2% (764명)

2023. 사랑의 재능 나눔 사업(소요예산10,000,000원)

-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와 협업하여 학생들의 전문 교육능력을 통한 사랑의 재능나눔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의 구현
- 사업근거 : 2022. 응암3동 주민총회 참여예산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 사업대상 : 응암3동 홀몸어르신 및 주거환경 취약계층 등
 - 사업내용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인테리어, 제빵, 미용 등) 및 봉사

응암3동 방범용 CCTV 설치(소요예산25,000,000원)

- : 응암3동 내 치안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여성 및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
- 사업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사업기간 : 2023. 2. ~ 2023. 8.
 - 사업대상 : 가좌로7길 6-1, 가좌로7길 4-1 골목
 - 사업내용 :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참다래마을 장독대 사업(소요예산5,000,000원)

- : 2012년부터 이어지는 응암3동의 전통 된장담그기 사업을 유지하며, 훈훈한 정성이 담겨있는 된장 나눔 사업을 추진
- 사업근거 : 2022. 응암3동 주민총회 참여예산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사업대상 : 응암3동 홀몸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
 - 사업내용 : 장 담그기 및 나눔행사 진행

우리가 함께 가꿔가는 아름다운 다래 불광천①(소요예산11,000,000원)

- : 불광천은 은평구의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생태 하천으로 생태교육 및 환경 실천 활동을 통하여 자연적 환경생태 보전과 관광자원화
- 사업근거 : 2022. 응암3동 주민총회 참여예산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대상 : 불광천 이용 주민
 - 사업내용 : 생태교육 및 환경 실천 활동

우리가 함께 가꿔가는 아름다운 다래 불광천②(소요예산34,000,000원)

- : 불광천 위 데크 산책로를 활용하여 아치를 조성하고 낙엽 덩굴나무인 다래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그늘막 조성 및 우수한 경관을 제공
- 사업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3. 1. ~ 2023. 6.
 - 사업대상 : 불광천길 312 앞 산책로
 - 사업내용 : 다래나무 그늘막 조성

안전한 도시가스 생활실천 사업(소요예산15,000,000원)

- : 홀몸어르신, 거동불편 어르신 가구를 발굴하여 가스안전장치 설치 사업을 진행 함으로써 가스 누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마을을 형성
- 사업근거 : 2022. 응암3동 주민총회 참여예산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23. 5. ~ 2023. 12.
 - 사업대상 : 응암3동 거주 안전취약가구(홀몸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 등)
 - 사업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형 가스차단기)설치





응암3동 주민자치계획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추진협약서

은평구청, 응암3동 주민자치회는

응암3동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고 결정한 응암3동 주민자치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응암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民과 官이 함께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상호 협약합니다.

2022년 9월 17일

은평구청장 김 미 경

김 미 경

응암3동 주민자치회 회장 조 영 만

조 영 만

10. 주민자치외 활동

2022. 의제개발 역량강화 워크샵

□ 사업목적 :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소통의 시간을 통해, 결속과
자치회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분과회의 및 정기회의



분과회의 및 정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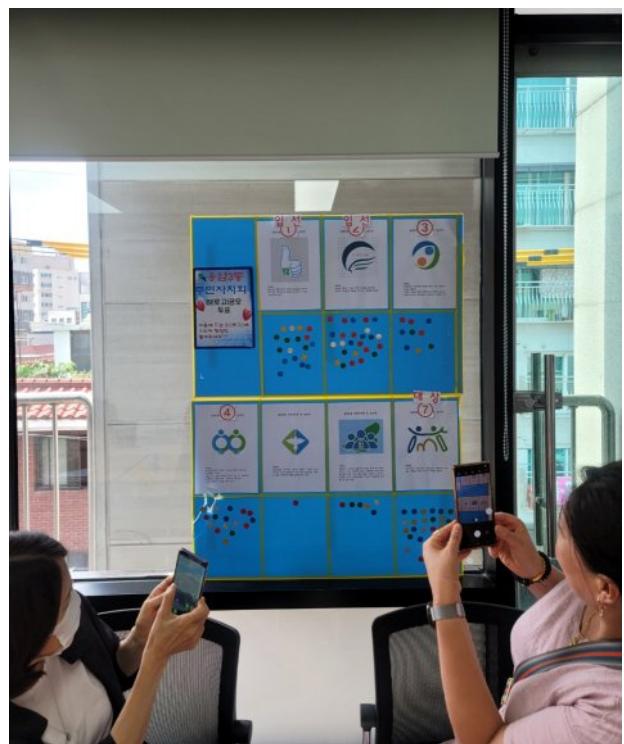


참다래마을 문화축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마을로고 공모전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11.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6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0.07.09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

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 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퇴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 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

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

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 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

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 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부 칙<제1480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12.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1.12.09 규칙 제876호

(일부개정) 2022.07.07 규칙 제8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이라 함은 주민휴게실, 인터넷방,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도서사랑방,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다용도실, 서예교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생"이라 함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강사"라 함은 위촉을 받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자로, "일반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자)와 "자원봉사자 강사"(무료로 강의

하는 자)로 구분한다.

6. "강사 인력풀"이라 함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수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강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협의회

제3조(기능)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 결산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사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동 주민자치회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치회관

제10조(수강·사용신청 및 승인) ①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인원의 범위 안에서 수강대상자를 선정하되, 수강신청자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접수자를 우선하여 수강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자치회관의 운영시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하는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장은 운영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이용의 제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을 제한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수강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동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 계좌에 수강시작일 전일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수강료의 집행)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2. 자치회관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4. 자치회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5. 자치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개최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13조의3(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3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1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4(운영계획)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프로그램 운영
2. 주민자치회 운영
3. 자원봉사자 운영
4.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지역특화사업
5. 기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제4장 강사관리 및 운영

제14조(관리 및 운영) 강사의 관리는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며, 프로그램 운영자인 각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강좌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자치회관에 배치한다.

제15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6조(모집) ① 강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강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개모집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고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공고문 게시
 2. 강좌 분야별 전문단체 및 전문학원 등에 모집 안내공문 발송
 3. 구 소식지, 지역신문, 케이블 TV, 기타 홍보물 활용
-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강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강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촉) ① 강사는 정기위촉과 수시위촉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 ② 정기위촉은 매년 말 강의실적 및 경력 등을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수시위촉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 이내로 하고, 위촉사항을 주민자치회에 사후 통보한다.

제18조(해촉)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

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강좌의 중복 제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인이 구 관내 자치회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순위) 신규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강사를 충원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3. 당해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자
4.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강사교육)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소양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이력관리) 구 자치회관 담당부서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부 칙<제876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등의 적용례) 제4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89호, 2022. 7. 7.>(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에서 ⑧까지 생략

2022년 응암3동 주민총회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22. 12

발행처 | 응암3동 주민자치회

발행인 | 주민자치회장 조영만

발행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410-17

응암3동주민센터 3층

02-303-7745

제작 | 인크맥스